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9. 9. 20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9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9월 1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6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이종현)

### 가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, 불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삭제 내지는 완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 (권리·의무의 승계 등) 개정으로 인한 재개발 구역내 권리자의 권리변동신고 요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(안 제10조)
- 도시재개발법 제46조(비용부담의 원칙)에 명시로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(안 제12조)
-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인정면적은 165㎡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(안 제17조제3항)
- 분양예정지 토지가격평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완화하여 토지대장, 가옥대장 등 제출서류 삭제(안 제19조제1항제3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유재한)

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삭제 또는 완화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,

- 가. 우리구 조례 제10조(권리변동의 신고요령)의 삭제는 도시재개발법 제6조(권리의무의 승계)의 1항이 '99. 3. 30일 삭제된 데 따른 것이며
- 나. 조례 제12조(공공시설의 설치범위)의 삭제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(비용부담의 원칙) 1항과 2항에 재개발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
- 다. 조례 제17조(국공유지의 연고권) 3항의 연고권 인정면적은 165㎡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위조례(서울시 조례 제19조제1항)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
- 라. 조례 제19조(가격평가절하) 제1항3호(토지대장·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)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하지 않도록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9. 9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, 불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삭제 내지는 완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(권리·의무의 승계 등) 개정으로 인한 재개발구역내 권리자의 권리변동신고 요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(안 제10조)
- 나. 도시재개발법 제46조(비용부담의 원칙)에 명시로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(안 제12조)
- 다.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명시되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인정면적은 165㎡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(안 제17조3항)
- 라. 분양예정지 토지가격평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완화하여 토지대장, 가옥대장 등 제출서류 삭제(안 제19조1항3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도시재개발법 제6조, 제46조,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
- 나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마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중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0조(권리변동의 신고요령) ①사업시행인 가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 지 않은 자가 부담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2조(공공시설의 설치범위) ①다음 각호 의 시설은 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 단 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, 시설별 비용부 담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1.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노폭 12m이 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</p> <p>2.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</p> <p>3. 하천</p> <p>②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 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7조(국공유지의 연고권 등) ①~②생략</p> <p>③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㎡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 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 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국공유지의 연고권 등) ①~②(현행 과 같음)</p> <p>③ &lt;삭 제&gt;</p>
<p>제19조(가격평가절차) ①의 1~2 생략</p> <p>3. 토지대장, 가옥대장, 토지 및 건물등 기부등본 각 1부</p> <p>①의 4~② 생략</p>	<p>제19조(가격평가절차) ①의 1~2(현행과 같 음)</p> <p>3.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</p> <p>①의 4~②(현행과 같음)</p>